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
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정관 (산업통상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「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」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,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없이 충전구역에 주차,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시설에서 전기차 수 대비 과도하게 설치된 충전구역이 빈채로 방치되는 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불편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임

이에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단순 주차행위, 충전구역 밖에서 허용된 시간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점유하는 행위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해 충전 인프라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, 내연차도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입주민 간의 주차갈등을 일부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차 이용자도 내연차 이용자와 같이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(안 제18조의8 제1항제6호 및 제7호)
- 나.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고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의 충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(안 제18조의8제1항제8호)
- 다. 아파트에만 허용된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, 기숙사 등으로 확대하여 일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(안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다목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중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6. 8. 20. ~ 9. 30.)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8제1항제6호 중 “2시간”을 “구동축전지의 충전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주차하거나, 2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14시간”을 “구동축전지의 충전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주차하거나, 14시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”를 “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형축전지”로, “사용하는”을 “사용하거나 제6호 또는 제7호에서 허용된 시간 범위를 초과하여 점유하는”으로 한다.

별표 제1호다목1) 및 2) 외의 부분 중 “아파트에”를 “제18조의5제1호자목에 따른 업무시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(이하 “대상시설”이라 한다)에”로, “해당 아파트”를 “대상시설”로, “입주자등을”을 “입주자등 및 그 밖의 대상시설별 소유자 등 관리주체에게 차량을 등록하여 해당 주차장을 상시 사용하는 정기이용자를”로, “같다)”를 ““입주자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목 1) 중 “아파트 관리주체 등(”를 “대상시설 관리주체 등(대상시설 소유자,”로 하며, 같은 목 2) 중 “아파트 관리주체 등”을 “관리주체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8조의8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)	제18조의8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)	제18조의8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)		
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----- ----- -----.	① ----- ----- -----.		
1. ~ 5. (생략)	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6.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 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 시설의 충전구역에 <u>2시간</u>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	6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동충전지</u> <u>의 충전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주차하거나, 2시간</u> ----- ----- --	6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동충전지</u> <u>의 충전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주차하거나, 2시간</u> ----- ----- --		
7.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 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 시설(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 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)의 충전구역에 <u>14시간</u>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	7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동충전지</u> <u>의 충전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주차하거나, 14시간</u> -----	7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동충전지</u> <u>의 충전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주차하거나, 14시간</u> -----		

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<u>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</u>의 충전외의 용도로 <u>사용하는</u> 행위 ② (생략)	----- -- 8. ----- ----- <u>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형 축전지</u>--- <u>사용하거나 제6호 또는 제7호에서 허용된 시간 범위를 초과하여 점유하는</u> -- --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부 자동차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325